|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경비지출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 수정에 관한 공고>에 관한 해설**  발표일자: 2016년5월10일  출처: 국가세무총국관청  <국가세무총국의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임시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10]18호)와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사정∙징수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10]19호, 이하 “19호문”라 약칭)에서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사정∙징수하는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그 중 한가지 방식이 경비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한 후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국무원의 통일적 업무분담에 근거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이하 ‘영개증’이라 약칭) 시행을 전면 추진하고, 영개증 이후 기존 영업세를 납부한 수입을 증치세 납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영업세는 세액포함가격이고, 증치세는 가격 외 세금이기 때문에 상술한 문건 중 사정∙징수방식의 과세소득액에 관한 계산공식은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환산할 수 없어 이에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세소득액=당기(期) 경비지출액/ (1-사정이윤율) × 사정이윤율  신고징수절차의 정확한 계산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등 신고서 배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30호) 중 상응하는 신고서의 작성설명, 즉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기업소득세 분기 및 연도납세신고서(사정∙징수기업에 적용) / (상설기구와 국제운송 면세신고 구성하지 않음)> 작성설명 중 “경비지출환산에 따른 과세소득액의 계산” 중 “환산한 수입액”의 계산공식도 함께 수정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영개증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비거주자기업에 대해 경비지출의 수입환산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조사 결정할 경우 19호문에 확정된 이윤율 범위 내에서 계속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공고의 집행기간과 영개증 시행 전면 추진은 함께 유지시키며, 즉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按经费支出换算收入方式核定非居民企业应纳税所得额计算公式的公告》的解读**  发布日期：2016年05月10日  来源：国家税务总局办公厅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税收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10〕18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非居民企业所得税核定征收管理办法>的通知》（国税发〔2010〕19号，以下称19号文）中规定了非居民企业所得税核定征收的方式，其中一种方式就是按经费支出换算收入后计算应纳税所得额。  　　根据国务院统一部署，自2016年5月1日起，在全国范围内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称营改增）试点，营改增后，对于原来缴纳营业税的收入改为缴纳增值税，由于营业税是价内税，增值税是价外税，上述文件中关于核定征收方式的应纳税所得额计算公式已不能准确换算非居民企业的应纳税所得额。因此，我们将计算公式修改为：  　　应纳税所得额=本期经费支出额/（1-核定利润率）×核定利润率  　　为保证申报征收环节的准确计算，我们对《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非居民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等报表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30号）中的相应申报表的填表说明，即《中华人民共和国非居民企业所得税季度和年度纳税申报表（适用于核定征收企业)/(不构成常设机构和国际运输免税申报）》填表说明中“按经费支出换算应纳税所得额的计算”中的“换算的收入额”的计算公式一并进行了修改。  　　主管税务机关在营改增后，对符合条件的非居民企业按经费支出换算收入核定应纳税所得额的，应继续在19号文确定的利润率范围内进行核定。  　　本公告的执行时间与全面推开营改增试点保持一致，即从2016年5月1日起施行。 |